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481~482p	개념,공식-설명	<p>481p</p> <p>3. 대량반복적인 업무 분야</p> <p>①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</p> <p>② 국민건강보험금 급여결정에 대한 심판</p> <p>③ 고용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재심사</p> <p>④ 산재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재심사★</p> <p>⑤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★</p> <p>⑥ 단,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취소·정지처분에 대한 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리·재결한다.★</p> <p>482p</p> <p>1. 서 설</p> <p>국가보훈부장관의 일정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/ 국가보훈부장관에게/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(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)/ 이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여,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제한된다.</p>	<p>481p</p> <p>3. 대량반복적인 업무 분야</p> <p>①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</p> <p>② 국민건강보험금 급여결정에 대한 심판</p> <p>③ 고용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재심사</p> <p>④ 산재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재심사★</p> <p>482p</p> <p>1. 서 설</p> <p>국가보훈부장관의 일정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/ 국가보훈부장관에게/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(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).</p>
485~485p III, IV	개념,공식-설명	<p>III 청구이유 유무</p> <p>1. 문제제기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.</p> <p>2. 신뢰보호원칙의 요건</p> <p>3. 소 결</p> <p>① 관할 지방경찰청장/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함으로써 신청인 甲의 권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.</p> <p>② 다만, 관할 경찰서장의 정지처분과 관련하여, 청구인 甲은 정지처분이 아님을 이미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, 청구인 甲에게 관할 경찰서장의 정지처분을 신뢰할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.</p> <p>③ 결국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취소처분은 적법하다.</p> <p>IV 결 론</p> <p>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.</p>	<p>III 청구이유 유무</p> <p>1. 문제제기 甲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는 행정행위 철회 사유의 존재 여부와 철회의 제한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.</p> <p>2. 행정행위의 철회사유 (1) 운전면허정지처분 철회의 적법성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 예외로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,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,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, 또는 상대방의 동기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/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(철회)의 의미를 포함한다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(대판 1990.02.23. 89누7061). 따라서 철회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하는 것은 위법하다.</p> <p>(2) 소 결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(비록 그와 같은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[별표 16]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하더라도/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/ 적법한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해 철회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.</p> <p>3. 신뢰보호의 원칙 (1) 문제점 甲이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철회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甲의 신뢰에 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문제된다.</p> <p>(2) 요 건 ① 행정청의 선행조치 :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선행조치에 해당한다. ②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: 사안은 사후에 선행조치가 변경될 것을 사인이 예상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사인의 사유나 사실관계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甲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다. ③ 신뢰에 기초한 사인의 처리 : 甲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신뢰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였다. ④ 인과관계 : 甲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있다. ⑤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 : 관할 지방경찰청은 甲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선행조치에 반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.</p> <p>(3) 소 결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甲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고, 즉 운전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/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/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/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/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(대판 2000.2.25. 99누10520)/ 따라서 甲의 신뢰에 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.</p> <p>IV 결 론</p> <p>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.</p>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485~485p III, IV	해설	<p>III 청구이유 유무</p> <p>1. 문제제기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.</p> <p>2. 신뢰보호원칙의 요건</p> <p>3. 소 결</p> <p>① 관할 지방경찰청장/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함으로써 신청인 甲의 권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.</p> <p>② 다만, 관할 경찰서장의 정지처분과 관련하여, 청구인 甲은 정지처분이 아님을 이미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, 청구인 甲에게 관할 경찰서장의 정지처분을 신뢰할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.</p> <p>③ 결국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취소처분은 적법하다.</p> <p>IV 결 론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제2장 행정심판법 485</p>	<p>III 청구이유 유무</p> <p>1. 문제제기 甲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는 행정행위 철회 사유의 존재 여부와 철회의 제한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.</p> <p>2. 행정행위의 철회사유</p> <p>(1) 운전면허정지처분 철회의 적법성 관례에 의하면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없는 때, 행정처분에 허자가 있는 때,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,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(철회의 의미)를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(대판 1990.02.23. 89누7061). 따라서 철회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하는 것은 위법하다.</p> <p>(2) 소 결 신행정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(비록 그와 같은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[별표 16]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)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/ 특별한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해 철회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.</p> <p>3. 신뢰보호의 원칙</p> <p>(1) 문제점 甲이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철회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甲의 신뢰에 관한 위법한 처분인지 문제된다.</p> <p>(2) 요 건 ① 행정청의 선행조치 :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선행조치에 해당한다. ②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: 사안은 사유에 선행조치가 변경될 것을 사인이 예상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사인의 사위나 사실은에 동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甲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다. ③ 신뢰에 기초한 사인의 처리 : 甲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신뢰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였다. ④ 인과관계 : 甲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있다. ⑤ 선행조치에 변화는 후행처분 :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甲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선행조치에 변화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.</p> <p>(3) 소 결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甲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고, 즉 운전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/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한 공익에 반한다고 보지 아니하므로/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/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/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(대판 2000.2.25. 99누10520)/ 따라서 甲의 신뢰에 변화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.</p> <p>IV 결 론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제2장 행정심판법 485</p>

일부 정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수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.
특별행정심판의 종류와 관련된 정오사항임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